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구 미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보고이유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급여법 제35조, 제38조
 - 사회복지급여법 시행령 제20조
 -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 필 요 성 : 법정계획

다. 계획 변경 과정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 TF 구성



세부사업(과업)
모니터링 실시



세부사업(과업)별
모니터링 결과 검토



심의 및 의회보고



주민 공고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마련

라. 세부추진일정

연번	시기	내용	비고
1	2023. 4월	▶ 이행점검 모니터링 TF 구성 (23명)	
2		▶ 사전교육 실시 (2회)	
3	6~9월	▶ 이행점검 모니터링 실시	
4	11월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5		▶ 의회 보고	
6	12월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도 제출	

마. 2023년 당초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용

▶ 폐지 : 1개 사업 ▶ 신설 : 1개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 유형	변경 사유	비고
1-3-6	생명자립이양정으로 지역사회생명존중 문화형성사업	폐지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폐지	
1-3-8	청년고민상담소	신설	1-3-6 사업폐지에 따라 보완적 사업	

▶ 변경 : 35개 사업 45건

연번	구분	건수	변경 사유	비고
1	지원대상	7	수요 변화	
2	사업내용	8	내용 명확화, 성과지표 변경	
3	사업비	11	자원 및 예산, 수요 변화	
4	수행목표	18	자원 및 예산 변화, 내용 명확화	
5	추진체계	1	전달체계 및 수행기관 변경	

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 4대 추진전략, 28개 세부사업 [8개 중점추진사업]

연번	분야	세부사업(과업)명	비고
1	사회보장 전략 1 (안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중점
2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구미 희망 더하기 사업	중점
3		세이프티 존 설치	
4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운영	
5		찾아가는 이동건강 버스운영	
6		사회참여를 위한 바우처 택시 운영	
7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리어 프리사업	
8	사회보장 전략 2 (일자리)	구미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점
9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중점
10		아이 행복 도우미 사업	
11		감정 노동자 심리지원 강화사업	
12		지역 실직자 직업훈련 사업	
13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14		구미50+ 구축 및 운영	
15	사회보장 전략 3 (돌봄체계)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중점
16		고위기 청소년 안전망 사업	중점
17		육아공동체 자녀 돌봄 품앗이 활성화 사업	
18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19		인공지능(AI) 반려로봇 효돌이 운영	
20		마을공동체 노인 돌봄 사업	
21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22	사회보장 전략 4 (교육·문화)	주민 주도형 인문마을 공동체 조성사업	중점
23		자원봉사대학 운영	중점
24		한책 하나구미 운동	
25		청소년 진학·진로 지원센터 운영	
26		구미형 행복박람회 운영	
27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운영	
28		스마트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붙임자료 :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 (대표협의체)

-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과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강 명 천
	팀 장	박 연 길
	담 당 자	안 영 순 (480-5102)